

# 에너지이용 합리화법

## (3단 비교)

법	시행령	시행규칙
<p>제24조(에너지진단 등)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(이하 "에너지다소비사업자"라 한다)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(이하 "에너지관리기준"이라 한다)을 부문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22조(에너지다소비사업자) 법 제24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"라 함은 연료·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(이하 "연간에너지사용량"이라 한다)가 2천티·오·이 이상인 자를 말한다.</p> <p>[전문개정 2006.6.22]</p>	
<p>②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(이하 "진단기관"이라 한다)으로부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당해 사업장의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여부에 대한 진단(이하 "에너지진단"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물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없거나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은 아파트·발전소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22조의2(에너지진단주기 등)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간(이하 "에너지진단주기"라 한다)은 별표 3과 같다.</p> <p>②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만티·오·이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10만티·오·이 이상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구역별로 나누어 에너지진단(이하 "부분진단"이라 한다)을 실시할 수 있으며, 1개 구역 이상에 대하여 부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에너지진단주기 안에 에너지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.</p>	<p>제11조의2(에너지진단의 제외 대상 사업장)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"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장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</li> <li>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</li> <li>3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3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용도만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</li> </ol>

<p>③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진단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진단기관을 관리·감독한다.</p> <p>④산업자원부장관은 자체에너지절감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</p>	<p>③에너지진단주기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, 에너지진단을 개시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한다.</p> <p>[본조신설 2006.6.22]</p> <p>제22조의3(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관리·감독 등)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(이하 "진단기관"이라 한다)에게 요구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 지정기준의 유지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진단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에너지진단 내용의 이행 실태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그 밖에 진단기관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 </ol> <p>[본조신설 2006.6.22]</p>	<p>[본조신설 2006.7.4]</p> <p>제11조의3(에너지진단의 면제 등)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</p>
---	--	---

<p>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⑤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(이하 "에너지관리지도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</p> <p>⑥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</p>	<p>제22조의4(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) ①산업자원부장관이</p> <p>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에</p>	<p>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평가기준에 따라 자발적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자로 선정된 자</p> <p>2. 에너지절약유공자로서 「정부표창규정」 제10조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권자가 준 단체표창을 받은 자</p> <p>②제1항에 따른 면제 또는 연장의 범위, 신청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/p> <p>[본조신설 2006.7.4]</p>
---	---	---

<p>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 대상·규모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(이하 "에너지진단비용"이라 한다)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</p> <p>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</p> <p>2. 연간에너지사용량이 5천티·오·이 미만일 것</p> <p>②제1항에 해당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서 에너지진단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에너지진단신청서를 제출하는 때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/p> <p>[본조신설 2006.6.22]</p>	
<p>⑦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진단기관의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22조의5(진단기관의 지정기준)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와 기술인력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.</p> <p>[본조신설 2006.6.22]</p>	<p>제11조의4(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) ①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신청시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에너지진단전문</p>

		<p>기관 변경지정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(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된 것에 한한다)를 첨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)을 확인하여야 하며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업계획서</li> <li>2. 보유장비명세서</li> <li>3. 기술인력명세서(자격증사본,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)</li> </ol> <p>③산업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④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그 지정서를</p>
--	--	---

<p>⑧에너지진단의 범위 및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/p> <p>[전문개정 2005.12.23]</p> <p>제24조의2(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) 산업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</li> <li>2. 에너지관리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정하게 에너지진단을 행하는 경우</li> <li>3.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</li> </ol>		<p>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[본조신설 2006.7.4]</p> <p>제11조의5(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)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[본조신설 2006.7.4]</p>
---	--	--

<p>4.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</p> <p>5.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</p> <p>[본조신설 2005.12.23]</p> <p>제25조(에너지다소비업자의 신고 등&lt;개정 1999.1.29, 2005.12.23&gt;) ①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에너지사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&lt;개정 1997.8.22, 1999.1.29, 2002.3.25, 2003.12.30, 2005.12.23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년도 에너지사용량·제품생산량</li> <li>2. 당해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·제품 생산예정량</li> <li>3.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</li> <li>4. 전년도 에너지 이용합리화 실적 및 당해연도의 계획</li> <li>5.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</li> </ol>		<p>제12조(에너지사용량신고)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량의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&lt;%생략:서식7%&gt; 의한다.</p>
--	--	--

<p>(이하 "에너지관리자"라 한다)의 현황</p> <p>②시·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&lt;신설 2002.3.25&gt;</p> <p>③삭제 &lt;2005.12.23&gt;</p> <p>제33조(개선명령)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,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. &lt;개정 1997.8.22, 1999.1.29, 2005.12.23&gt;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&lt;신설 1997.8.22&gt;</p>	<p>제23조(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등)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결과 10퍼센트이상의 에너지효율개선이 기대되고 효율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. &lt;개정 1999.6.30, 2006.6.22&gt;</p> <p>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체적인 개선사항·개선기간등을 명시하여야 한다.&lt;개정 1999.6.30&gt;</p> <p>③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때에는 개선명령일부터 60일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개선기간만료일부터 1</p>	
--	--	--

<p>제76조(사업)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&lt;개정 1997.8.22, 1999.1.29, 2003.12.30, 2004.12.31, 2005.12.23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</li> <li>2. 에너지기술의 개발·도입·지도 및 보급</li> <li>3. 에너지이용합리화, 신·재생에너지의 개발·보급 및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한</li> </ol>	<p>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&lt;개정 1999.6.30, 2006.6.22&gt;</p> <p>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&lt;개정 1999.6.30&gt;</p> <p>[전문개정 1998.2.2]</p> <p>제23조의2(개선명령의 사후관리 등)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의 이행여부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.&lt;개정 1999.6.30&gt;</p> <p>[본조신설 1998.2.2]</p>	
---	---	--

<p>자금의 용자 및 지원</p> <p>3의2. 제2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</p> <p>4.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관 리지도</p> <p>5. 신·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의 촉진</p> <p>6. 에너지관리에 관한 조사· 연구·교육 및 홍보</p> <p>7.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토지·건물 및 시설등의 취득·설치·운영·대여 및 양 도</p> <p>8.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집단 에너지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 및 관리</p> <p>9.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 율관리 및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</p> <p>10.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 업에 부대되는 사업</p> <p>11.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산업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기타의 기관등이 위탁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및 온 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 한 사업</p>		
---	--	--

<p>제88조(교육)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자,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&lt;개정 2003.12.30&gt;</p> <p>②에너지관리자,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. &lt;신설 2003.12.30&gt;</p> <p>③에너지다소비사업자,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그가 선임 또는 채용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자,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. &lt;신설 2003.12.30, 2005.12.23&gt;</p> <p>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담당기관·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. &lt;개정 1997.8.22, 1999.1.29&gt;</p> <p>제89조(보고 및 검사 등&lt;개정 2005.12.23&gt;)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이</p>		<p>제22조(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) ①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·기간·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3의2와 같다.</p> <p>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관리자에게 교육기관 및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③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[본조신설 2004.7.12]</p> <p>제23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, 특별시장·광</p>
---	--	---

<p>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,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·수입업자·판매업자, 시험기관, 진단기관,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·사업장·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·에너지사용기자재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&lt;개정 199.1.29, 2002.3.25, 2005.12.23&gt;</p> <p>②삭제 &lt;1997.8.22&gt;</p> <p>③삭제 &lt;1997.8.22&gt;</p> <p>④제8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공단의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.</p>		<p>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가 보고를 명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&lt;개정 2006.7.4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·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경우 연도별 생산·수입 또는 판매실적</li> <li>2. 에너지절약전문기업(법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경우 영업실적(연도별 계약실적을 포함한다)</li> <li>3.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경우 개선명령 이행실적</li> </ol> <p>②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소속공무원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&lt;개정 2006.7.4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한 시험능력확보여부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</li> </ol>
--	--	---

		<p>3.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수행한 사업에 관한 사항</p> <p>4.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</p> <p>4의2.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</p> <p>5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량의 신고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</p> <p>5의2.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개선명령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</p> <p>6.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설치자의 검사이행에 관한 사항</p> <p>7.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검사이행에 관한 사항</p> <p>8. 법 제58조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폐기 등의 신고이행에 관한 사항</p>
--	--	--

<p>제90조(수수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1. 제2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</p> <p>2. 제58조제1항·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</p> <p>[전문개정 2005.12.23]</p> <p>제91조 (청문)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&lt;개정 1999.1.29, 2005.12.23&gt;</p> <p>1.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</p>		<p>9.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</p> <p>10.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이행에 관한 사항</p> <p>[전문개정 2002.11.12]</p> <p>제24조(에너지진단 수수료)</p> <p>①진단기관은 법 제90조제1호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진단에 소요되는 일수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, 직접 인건비, 직접 경비, 제 경비 및 기술료 등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해당진단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[본조신설 2006.7.4]</p>
--	--	---

<p>또는 판매금지명령</p> <p>2.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취소</p> <p>3.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관의 지정취소</p> <p>[전문개정 1997.8.22]</p> <p>제9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 &lt;개정 1997.8.22, 1999.1.29&gt;</p> <p>②시·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)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. &lt;신설 2003.12.30&gt;</p> <p>③산업자원부 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·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&lt;개정 1999.1.29, 2002.3.25, 2005.1.23&gt;</p> <p>1.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</p>	<p>제38조의4(권한의 위임) 산업자원부 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0조제3항제1호 및 제1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 &lt;개정 2006.6.22&gt;</p> <p>[본조신설 2003.3.25][제38조의2에서 이동 &lt;2004.6.29&gt;]</p> <p>제39조 (업무의 위탁) ①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업무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. &lt;개정 2006.6.22&gt;</p> <p>1.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</p> <p>2.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</p> <p>3.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통보의 접</p>	
--	--	--

<p>2.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</p> <p>3.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통보의 접수</p> <p>4.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</p> <p>4의2.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관의 관리·감독</p> <p>5.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지도</p> <p>6. 제5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, 검사증의 교부 및 검사대상기기 폐기 등의 신고의 접수</p> <p>7. 제59조제3항 및 동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·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에 관한 승인</p>	<p>수</p> <p>4.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</p> <p>4의2.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·감독</p> <p>5.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</p> <p>6. 법 제58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</p> <p>7.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교부(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한한다)</p> <p>8. 법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폐기·사용중지·설치자 변경에 대한 신고의 접수</p> <p>9.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·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</p> <p>②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시·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·검사기관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</p>	
--	--	--

<p>제100조(과태료) ①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 &lt;신설 2005.12.23&gt;</p> 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 &lt;신설 2002.3.25, 2005.12.23&gt;</p> <p>1.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·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요청하지 아니한 자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관자는 제외한다.</p> <p>2.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</p>	<p>에 위탁한다. &lt;개정 2006.6.22&gt;</p> <p>1.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</p> <p>2.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교부(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한한다)</p> <p>[전문개정 2002.9.26]</p> <p>제42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&lt;개정 1999.6.30, 2002.9.26&gt;</p> <p>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&lt;개정 1999.6.30, 2002.9.26&gt;</p>	<p>제26조(과태료의 부과 기준) 법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및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. 이 경우 사업자의 사업규모, 위반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.</p> <p>[전문개정 2006.7.4]</p>
---	---	--

<p>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 다만, 제1호·제3호 내지 제5호·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. &lt;개정 1999.1.29, 2002.3.25, 2003.12.30, 2005.12.23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7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·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자</li> <li>2. 삭제 &lt;2002.3.25&gt;</li> <li>3.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 주관자</li> <li>4.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의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사업주관자</li> <li>5.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또는 실태파악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주관자</li> <li>6.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수</li> </ol>	<p>③삭제 &lt;2006.6.22&gt;</p>	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<p>요관리투자계획 및 시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</p> <p>7.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·보완하여 시행하지 아니한 자</p> <p>8.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를 설치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자</p> <p>8의2.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</p> <p>9. 제25조제1항·제58조제7항 또는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</p> <p>10. 삭제 &lt;2002.3.25&gt;</p> <p>11. 삭제 &lt;2002.3.25&gt;</p> <p>12.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에너지관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</p> <p>13. 제8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</p>		
---	--	--

<p>14.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</p> <p>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. &lt;개정 2005.12.23&gt;</p> <p>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부과·징수한다. &lt;개정 1997.8.22, 1999.1.29, 2002.3.25, 2005.12.23&gt;</p> <p>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&lt;개정 1997.8.22, 1999.1.29, 2002.3.25, 2005.12.23&gt;</p> <p>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. &lt;개</p>		
--	--	--

<p>정 1997.8.22, 1999.1.29, 2002.3.25, 2005.12.23&gt;</p> <p>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. &lt;개정 2002.3.25, 2005.12.23&gt;</p> <p>부칙 &lt;제7745호,2005.12.23&gt;</p> <p>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에너지진단의무에 관한 적용례)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에너지진단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부터 적용한다.</p>	<p>부칙 &lt;제19540호,2006.6.22&gt;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칙 &lt;제351호,2006.7.4&gt;</p> <p>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---	---	---